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37-01

www.mafra.go.kr

축 산 법 령

2013.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총 목 차

1. 축산법·축산법시행령·축산법시행규칙	1
□ 축산법시행령 별표	141
□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161
□ 축산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79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	제1조 (목적)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2조 삭제 <2013.2.20> 3	제2조 (가축의 종류) 3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7	제3조 삭제 <2013.2.20> 3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4
	제4조 삭제 <2013.2.20> 3	제3조 삭제 <2013.4.11> 5
	제5조 삭제 <2013.2.20> 3	제4조 삭제 <2013.4.11> 5
	제6조 삭제 <2013.2.20> 3	제5조 (종축업의 대상) 5
	제7조 삭제 <2013.2.20> 3	
	제8조 삭제 <2013.2.20> 3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회위원회의 구성) 7
	제9조 삭제 <2013.2.20> 3	제5조의3 (분과위원회) 9
제4조 (축산발전심의회) 7		제5조의4 (위원회의 기능) 9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10
		제5조의6 (회의) 10
		제5조의7 (의견의 청취) 11
		제5조의8 (간사) 11
		제5조의9 (수당) 11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p> <p>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12</p> <p>제6조 (가축의 등록) 13</p> <p>제7조 (가축의 검정) 17</p> <p>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19</p> <p>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20</p> <p>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20</p> <p>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22</p> <p>제12조 (수정사의 면허) 23</p> <p>제13조 (수정사의 교육) 27</p>	<p>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12</p> <p>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13</p> <p>제12조 (수정사의 면허) 23</p>	<p>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p> <p>제6조 (개량 대상 가축) 12</p> <p>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13</p> <p>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14</p> <p>제9조 (가축의 등록 등) 15</p> <p>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17</p> <p>제11조 (가축의 검정) 18</p> <p>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20</p> <p>제13조 (종축의 대여) 21</p> <p>제14조 (종축의 교환) 22</p> <p>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p> <p>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3</p> <p>제16조 (수정사시험) 25</p> <p>제17조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26</p> <p>제18조 (시험위원회) 26</p> <p>제19조 (수정사의 교육) 27</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28		제20조 삭제 <2013.4.11> 28
제15조 삭제<2012.2.22> 28		제21조 삭제 <2013.4.11> 28
제16조 삭제<2012.2.22> 28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28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28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31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31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32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32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34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34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34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34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37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37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38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38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40
	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41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41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43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43
	제14조의4 (비용의 지원) 44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44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46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7
제24조 (영업의 승계) 47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48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52 제27조 삭제<2010.1.25> 52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57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58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59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60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61 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64 제32조의3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67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69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70 제33조의3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71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48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51 제16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64 제16조의3 (경미한 사항의 변경) 66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 69 제17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78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52 제31조 삭제 <2013.4.11> 56 제32조 삭제 <2010.10.12> 56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57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58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60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61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70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71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p> <p>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73</p> <p>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74</p> <p>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77</p> <p>제34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78</p> <p>제34조의5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80</p> <p>제34조의6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80</p> <p>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80</p> <p>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84</p> <p>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86</p> <p>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88</p> <p>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89</p> <p>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91</p> <p>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95</p> <p>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96</p>		<p>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p> <p>제37조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73</p> <p>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74</p> <p>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76</p> <p>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80</p> <p>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80</p> <p>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83</p> <p>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86</p> <p>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87</p> <p>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88</p> <p>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89</p> <p>제44조 (등급의 표시) 91</p> <p>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92</p> <p>제46조 (등급의 공표) 94</p> <p>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96</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축산발전기금</p> <p>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97</p> <p>제44조 (기금의 재원) 98</p> <p>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99</p> <p>제46조 (자금의 차입) 100</p> <p>제47조 (기금의 용도) 101</p> <p>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104</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49조 (수수료) 107</p> <p>제50조 (청문) 111</p> <p>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111</p> <p>제52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3</p>	<p>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101</p> <p>제19조 (기금의 보조) 101</p> <p>제20조 (기금의 용자) 102</p> <p>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104</p> <p>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105</p> <p>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106</p> <p>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106</p> <p>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110</p> <p>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1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축산발전기금</p> <p>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99</p> <p>제49조 (사업의 종류) 101</p> <p>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104</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51조 (수수료) 107</p> <p>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107</p> <p>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11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별 칙</p> <p>제53조 (별칙) 115</p> <p>제54조 (별칙) 116</p> <p>제55조 (양벌규정) 117</p> <p>제56조 (과태료) 118</p> <p>부 칙 121</p>	<p>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3</p> <p>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18</p> <p>부 칙 121</p>	<p>부 칙 12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제 정 1963. 6.26, 법률 제 1363호	제 정 1963.12.16, 각 령 제 1746호	제 정 1963.12.16, 농 립 부 령 제 149호
일부개정 1968. 5.21, 법률 제 2008호	일부개정 1965.10.13, 대통령령 제 2255호	일부개정 1965.11.23, 농 립 부 령 제 194호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 2910호	전부개정 1970. 7. 9, 대통령령 제 5180호	일부개정 1966. 1. 1, 농 립 부 령 제 199호
전부개정 1977.12.19, 법률 제 3024호	일부개정 1973.12.31, 대통령령 제 6994호	일부개정 1968.10.16, 농 립 부 령 제 295호
일부개정 1981. 3. 7, 법률 제 3382호	일부개정 1975.11.19, 대통령령 제 7875호	일부개정 1969. 5.24, 농 립 부 령 제 315호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 3603호	전부개정 1977. 3.29, 대통령령 제 8519호	일부개정 1969. 8. 8, 농 립 부 령 제 379호
일부개정 1984. 8. 2, 법률 제 3738호	전부개정 1978. 3.22, 대통령령 제 8896호	전부개정 1969. 8.19, 농 립 부 령 제 390호
타법개정 1984.12.31, 법률 제 3763호	일부개정 1980.10.25, 대통령령 제10052호	일부개정 1972. 3. 8, 농 립 부 령 제 478호
일부개정 1987.12. 4, 법률 제 3995호	일부개정 1981.10. 8, 대통령령 제10479호	일부개정 1973. 9. 1, 농수산부령 제 541호
일부개정 1989. 3.31, 법률 제 4108호	전부개정 1985. 4.24, 대통령령 제11689호	일부개정 1973.12.24, 농수산부령 제 557호
타법개정 1990. 8. 1, 법률 제 4251호	타법개정 1986. 4.26, 대통령령 제11890호	일부개정 1974. 8. 9, 농수산부령 제 576호
타법개정 1990.12.27, 법률 제 4268호	일부개정 1989. 3.17, 대통령령 제12647호	일부개정 1974.11.20, 농수산부령 제 578호
타법개정 1991. 5.31, 법률 제 4378호	일부개정 1989. 7.13, 대통령령 제12757호	일부개정 1975. 7.31, 농수산부령 제 601호
타법개정 1993. 3. 6, 법률 제 4541호	타법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1976. 8. 5, 농수산부령 제 634호
전부개정 1993. 6.11, 법률 제 4557호	전부개정 1993.12.14, 대통령령 제14026호	전부개정 1977. 4.15, 농수산부령 제 680호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 4843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전부개정 1978. 8.17, 농수산부령 제 735호
타법개정 1996. 8. 8, 법률 제 5153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일부개정 1979. 7. 4, 농수산부령 제 768호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3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일부개정 1980.10.14, 농수산부령 제 801호
전부개정 1999. 1.29, 법률 제 5720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5호	일부개정 1982. 1. 9, 농수산부령 제 851호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 5815호	일부개정 1995. 2. 8, 대통령령 제14522호	일부개정 1984.11. 5, 농수산부령 제 917호
타법개정 1999. 9. 7, 법률 제 6018호	타법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일부개정 1984.12. 7, 농수산부령 제 923호
타법개정 1999.12.31, 법률 제 6101호	타법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85. 4.27, 농수산부령 제 930호
타법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호	타법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일부개정 1986. 9.27, 수 산 부 령 제 961호
일부개정 2001. 1.26, 법률 제 6381호	전부개정 1999. 7.29, 대통령령 제16493호	일부개정 1989. 3.17, 농 립 부 령 제1022호
일부개정 2002. 5.13, 법률 제 6699호	타법개정 2000. 3.24, 대통령령 제16757호	일부개정 1990. 1.19, 농 립 부 령 제1038호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 6821호	일부개정 2001. 4.24, 대통령령 제17212호	전부개정 1994. 6.29, 농 립 부 령 제1146호
타법개정 2006. 9.27, 법률 제 7995호	타법개정 2001. 6.22, 대통령령 제17243호	일부개정 1995. 1.23, 농 립 부 령 제1168호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06.12.28, 법률 제 8107호	타법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일부개정 1995. 7.28, 농 립 부 령 제1203호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 8182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9호	타법개정 1996.12.28, 농 립 부 령 제1246호
전부개정 2007. 4.11, 법률 제 8354호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1997.12. 4, 농 립 부 령 제1266호
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 8598호	일부개정 2004. 8.14, 대통령령 제18519호	타법개정 1998. 7. 3, 농 립 부 령 제1287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타법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전부개정 1999. 9. 7, 농 립 부 령 제1345호
일부개정 2009. 5.8, 법률 제 9666호	타법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일부개정 2000.12.15, 농 립 부 령 제1374호
타법개정 2009. 5.27, 법률 제 9717호	전부개정 2007. 5.25, 대통령령 제20074호	일부개정 2001. 6.19, 농 립 부 령 제1387호
일부개정 2010. 1.25, 법률 제 9952호	타법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일부개정 2004. 2.14, 농 립 부 령 제1460호
타법개정 2010. 5.25, 법률 제10310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일부개정 2004. 6.30, 농 립 부 령 제1476호
타법개정 2011. 8. 4, 법률 제11005호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0호	일부개정 2004. 8.17, 농 립 부 령 제1480호
일부개정 2012. 2.22, 법률 제11359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2006. 6.30, 농 립 부 령 제1529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전부개정 2007. 6.19, 농 립 부 령 제1556호
	타법개정 2012. 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13. 2.20, 대통령령 제24388호	타법개정 2008.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3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7호
		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53호
		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55호
		타법개정 2009. 6.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75호
		일부개정 2010.10.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51호
		타법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58호
		일부개정 2011. 3.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75호
		일부개정 2010.10.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51호
		일부개정 2012. 5.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76호
		타법개정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26호
		타법개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13. 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5호

측산법·측산법시행령·측산법시행규칙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p> <p>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p>	<p>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 <2013.2.20></p> <p>제3조 삭제 <2013.2.20></p> <p>제4조 삭제 <2013.2.20></p> <p>제5조 삭제 <2013.2.20></p> <p>제6조 삭제 <2013.2.20></p> <p>제7조 삭제 <2013.2.20></p> <p>제8조 삭제 <2013.2.20></p> <p>제9조 삭제 <2013.2.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동물(動物) 등을 말한다.</p> <p>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p> <p>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p>		<p>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p> <p>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p> <p>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젓·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p> <p>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 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p> <p>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p>		<p>제3조 삭제 <2013.4.11> 제4조 삭제 <2013.4.11></p> <p>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돼지·닭·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p> <p>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p> <p>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p>		<p>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p> <p>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p>		<p>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p>		<p>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p> <p>④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p>		<p>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p> <p>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p> <p>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p> <p>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3(분과위원회)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 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8(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본조신설 2013.4.11]</p> <p>제5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p> <p>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4.11]</p> <p>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p> <p>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젓소·돼지·닭·오리 및 말로 한다. <개정 2008.12.3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p>	<p>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p>	<p>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p> <p>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 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p> <p>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p> <p>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p> <p>나. 보조기억장치가 200기가바이트 이상이고 중앙연산장치가 2.4기가헤르츠 이상인 전산장비</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p>	<p>개량사업 계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p> <p>1. 다음 각 목의 인력</p> <p>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p>	<p>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p> <p>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p> <p>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중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p>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의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p> <p>제11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p> <p>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p> <p>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p>		<p>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p>		<p>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 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p>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p>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p> <p>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p> <p>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p> <p>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④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받</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급한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p> <p>제16조(수정사시험)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p>		<p>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0.10.12></p> <p>④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p> <p>⑤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제18조(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08.2.29, 2013.3.23></p> <p>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농업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p>②시험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p> <p>제19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p>제15조 삭제 <2012.2.22></p> <p>제16조 삭제 <2012.2.22></p> <p>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p>		<p>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 삭제 <2013.4.11></p> <p>제21조 삭제 <2013.4.11></p> <p>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p>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⑤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8조(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p>		<p>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p> <p>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p>		<p>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p> <p>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p> <p>2.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p>		<p>인 정액</p> <p>3.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p> <p>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p> <p>나. 유전성질환</p> <p>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p> <p>3.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p> <p>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p> <p>나. 유전성질환</p> <p>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p> <p>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22]</p> <p>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4.11]</p> <p>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10.1.25,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2013.3.23></p> <p>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0.1.25]</p>		<p>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p> <p>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p> <p>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10.12></p> <p>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p> <p>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p> <p>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p>	<p>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 	<p>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목개정 2010.10.1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13.3.23>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p>	<p>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0]</p> <p>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p> <p>1. 축산업 허가</p> <p>가.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p> <p>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p> <p>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p> <p>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20]</p>	<p>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3.4.11></p> <p>⑥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p> <p>⑦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3.4.11> [제목개정 2013.4.11]</p> <p>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p>	<p>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4.11]</p> <p>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p> <p>③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p>	<p>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⑥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p> <p>⑦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p> <p>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 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p>[본조신설 2013.2.20]</p>	<p>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p> <p>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 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p>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p>	<p>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p>	<p>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p>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p>	<p>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13.2.20]</p>	<p>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p> <p>③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3. 삭제 <2013.4.11> 4. 삭제 <2013.4.11> 5. 삭제 <2013.4.11> 6. 삭제 <2013.4.11> 7. 삭제 <2013.4.11>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p>②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p>		<p>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2]</p> <p>제24조(영업의 승계)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p> <p>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p>		<p>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2.5.23>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p>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 23조를 준용한다.</p> <p>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축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p>여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제목개정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p> <p>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p> <p>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p>	<p>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p> <p>③법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p> <p>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경우</p> <p>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p> <p>③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p>	<p>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2.22]</p> <p>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제목개정 2012.2.22]</p> <p>제27조 삭제 <2010.1.25></p>	<p>[제목개정 2013.2.20]</p>	<p>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p> <p>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종축업</p> <p>가. 종돈업</p> <p>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p> <p>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 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p> <p>나. 종계업·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p> <p>2. 부화업</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계·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 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 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p> <p>나.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p> <p>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p> <p>3. 정액등처리업</p> <p>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p> <p>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p> <p>다.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p> <p>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p> <p>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p> <p>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및 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p> <p>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p> <p>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p> <p>②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p> <p>[전문개정 2013.4.11]</p> <p>제31조 삭제 <2013.4.11></p> <p>제32조 삭제 <2010.10.12></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8조(축산업 허가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p>		<p>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p>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p> <p>③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2.22]</p> <p>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p>		<p>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p> <p>[제목개정 2013.4.11]</p> <p>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p>		<p>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p>②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p>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p>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p>		<p>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p>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취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p> <p>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 	<p>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p> <p>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p> <p>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p> <p>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 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p> <p>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p> <p>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p>	<p>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 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⑧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2.22]</p> <p>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p> <p>②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수행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④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⑦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2.2.22]</p> <p>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p>	<p>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p>②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p> <p>②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p>③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p> <p>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p>		<p>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p> <p>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p> <p>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p> <p>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⑥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p> <p>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p> <p>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p>		<p>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p> <p>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p> <p>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 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p> <p>④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②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p>[본조신설 2012.2.22]</p>		<p>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4.11]</p> <p>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p> <p>①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p>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6 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본조신설 2012.2.22]</p> <p>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p>	<p>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2.2.22]</p> <p>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p> <p>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2]</p> <p>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p>		<p>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p>[본조신설 2013.4.11]</p> <p>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p>		<p>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 표시된 소·돼지·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p> <p>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1. 계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고를 한 자</p> <p>2. 소·돼지의 도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 닭·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p> <p>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p> <p>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축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등을 거쳐 신청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p>		<p>계란, 소·돼지·닭·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p> <p>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p> <p>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1.25></p> <p>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p>		<p>(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010.1.25></p> <p>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p> <p>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p>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p> <p>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p> <p>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p> <p>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p>		<p>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p> <p>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p>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p> <p>③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p> <p>[제목개정 2010.1.25]</p>		<p>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p> <p>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p> <p>③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p> <p>[제목개정 2010.10.12]</p> <p>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p>②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p> <p>③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p> <p>[제목개정 2010.1.25]</p>		<p>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p> <p>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 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 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 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 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 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p> <p>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 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개정 2008.2.29, 2013.3.23></p>		<p>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p> <p>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p> <p>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40조(등급의 표시 등) ①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p>		<p>나. 돼지 도체의 경우</p> <p>1)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p> <p>2) 별표 4에 따른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p> <p>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p>		<p>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p> <p>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p> <p>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 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p> <p>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p> <p>③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p>④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p>		<p>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p> <p>⑤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p> <p>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p> <p>제46조(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p>		<p>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p> <p>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p> <p>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p> <p>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p>		<p>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p> <p>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p> <p>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축산발전기금</p> <p>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p>		<p>상장 또는 반출 여부</p> <p>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p> <p>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 요한 서류·장부 및 물건</p> <p>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 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축산발전기금</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제44조(기금의 자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 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p>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p> <p>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p>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p>	<p>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 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p>제19조(기금의 보조) ①법 제47조제2항</p>	<p>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20조(기금의 용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용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p> <p>②기금의 용자방법과 용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용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p>	<p>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용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용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용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p> <p>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p> <p>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p>	<p>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4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2012.2.22> <p>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51조(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2. 삭제 <2013.4.11> <p>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p>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p> <p>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p>		<p>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p> <p>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p> <p>④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p> <p>⑤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p> <p>⑥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p>	<p>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2.20]</p>	<p>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⑦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p> <p>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p> <p>제50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p>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51조</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다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p> <p>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p>	<p>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p>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p> <p>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2.2.22, 2013.3.23></p> <p>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p>	<p>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2.20, 2013.3.23></p> <p>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p>	<p>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p>[본조신설 2013.2.2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 칙</p> <p>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p> <p>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p>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p> <p>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p> <p>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p> <p>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0> [전문개정 2008.12.24]</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아니한 자</p> <p>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p>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 data-bbox="353 389 775 421">부 칙 <제8354호, 2007.4.11></p> <p data-bbox="302 485 824 75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302 826 824 1150">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p> <p data-bbox="302 1217 824 1294">제3조(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p>	<p data-bbox="891 389 1335 421">부 칙 <제20074호, 2007.5.25></p> <p data-bbox="853 485 1375 616">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853 683 1375 1054">제2조(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3 1121 1375 1294">제3조(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p>	<p data-bbox="1458 389 1872 421">부 칙 <제1556호, 2007.6.19></p> <p data-bbox="1406 485 1928 75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1406 826 1928 1150">제2조(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등록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p data-bbox="1406 1217 1928 1294">제3조(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p> <p>제4조(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p>	<p>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지정된 가축의 검정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양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를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p> <p>제5조(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 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p> <p>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호 본문 및 단서·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제2항, 제49조제8</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p> <p>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p> <p>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p> <p>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p>	<p>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6부터 ⑤9까지 생략</p> <p>부 칙 <제21180호, 2008.12.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호, 제50조제2항·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0부터 ⑥3까지 생략</p> <p>부 칙 <제33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8598호, 2007.8.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p> <p>부 칙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생략 ⑨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 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까지 생략 ㉕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p>	<p>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6부터 ⑩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53호, 2008.12.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p>	<p>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②6부터 ②8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 칙 <제24388호, 2013.2.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p>	<p>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부 칙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⑯생략</p> <p>부 칙 <제75호, 2009.6.30></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9666호, 2009.5.8></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p> <p>부 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p>	<p>(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 칙 <제151호, 2010.10.1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부 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p> <p>⑰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9952호, 2010.1.25></p>	<p>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 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p>	<p>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p> <p>부 칙 <제158호, 2010.11.2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p>	<p>제5호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㉗부터 ㉗까지 생략</p>	<p>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p> <p>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75호, 2011.3.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p> <p>부 칙 <제10310호,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p>		<p>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p> <p>부 칙 <제276호, 2012.5.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㉔부터 ㉘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 칙 <제11005호, 2011.8.4> (의료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 .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 . .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것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⑪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p> <p>⑫부터 ⑭까지 생략</p> <p>부 칙 <제11359호, 2012.2.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p>		<p>⑳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p>		<p>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4조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5호, 2013.4.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 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p>		<p>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0까지 생략</p> <p>③0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제1호의2·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p>		

축 산 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5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㉔부터 ㉕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축산업 시행령 별표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143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55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157
(제17조의2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58

[별표 1] <개정 2013.3.23>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축사에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돈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 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계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 시설을 설치할 것 (2) 종계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다)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사육 시설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나)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 시설을 설치할 것 (2) 종오리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오리의 관리(백신 접종,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추는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가)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함)를 설치할 것 (1)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2)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업을 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다)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라)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 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기타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함)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p>가) 소</p> <p>(1)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p> <p>(가)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여야 함</p> <p>(나)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 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함</p> <p>(2)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p> <p>나) 돼지</p> <p>(1)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돼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p> <p>(2) 정액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종</th> <th colspan="2">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th> <th rowspan="2">사료 요구율</th> <th rowspan="2">등지방 두께 (cm)</th> <th rowspan="2">생존 새끼 수 (마리)</th> </tr> <tr> <th>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th> <th>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th> </tr> </thead> <tbody> <tr> <td>랜드레이스, 요크셔</td> <td rowspan="2">135 이하</td> <td rowspan="2">700 이상</td> <td rowspan="5">2.2 이하</td> <td rowspan="4">1.5 이하</td> <td rowspan="4">14 이상</td> </tr> <tr> <td>두록</td> <td rowspan="3">1,000 이상</td> </tr> <tr> <td>버크셔, 햄프셔</td> <td>600 이상</td> </tr> <tr> <td>번식용 씨돼지</td> <td>715 이상</td> </tr> <tr> <td>재래돼지</td> <td>300 이상</td> <td>2.0 이하</td> </tr> </tbody> </table>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4 이상	두록	1,000 이상	버크셔, 햄프셔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715 이상	재래돼지	300 이상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4 이상																		
두록						1,000 이상																	
버크셔, 햄프셔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715 이상																						
재래돼지	300 이상	2.0 이하																					

구분	시설 및 장비																													
<p style="text-align: center;">종축 및 정액등</p>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분만 회차</th> <th colspan="2" style="width: 80%;">보정계수</th> </tr> <tr> <th style="width: 40%;">랜드레이스</th> <th style="width: 40%;">요크셔</th> </tr> </thead> <tbody> <tr><td>1</td><td>1.08</td><td>1.11</td></tr> <tr><td>2</td><td>1.04</td><td>1.04</td></tr> <tr><td>3</td><td>1.01</td><td>1.00</td></tr> <tr><td>4</td><td>1.00</td><td>1.00</td></tr> <tr><td>5</td><td>1.01</td><td>1.01</td></tr> <tr><td>6</td><td>1.03</td><td>1.02</td></tr> <tr><td>7</td><td>1.06</td><td>1.04</td></tr> <tr><td>8</td><td>1.08</td><td>1.06</td></tr> </tbody> </table> <p>* 보정방법 :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p> <p>(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 돼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돼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p>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p style="text-align: center;">사육 시설</p>	<p>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p> <p>나) 제조실 :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p> <p>다)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외부에서 들어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한다.</p>																													

구분	시설 및 장비																												
차단 및 방역 시설	<p>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p> <p>나) 정액등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p> <p>다)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장비	<p>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p> <table border="1" data-bbox="392 824 1329 1361"> <thead> <tr> <th data-bbox="392 824 517 869">구 분</th> <th data-bbox="517 824 970 869">기계·기구명</th> <th data-bbox="970 824 1329 869">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2 869 517 1010" rowspan="3">채취용</td> <td data-bbox="517 869 970 913">인공 질 1대</td> <td data-bbox="970 869 1329 913">소 정액 생산 시 해당</td> </tr> <tr> <td data-bbox="517 913 970 958">모형암태지 1대</td> <td data-bbox="970 913 1329 958">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td> </tr> <tr> <td data-bbox="517 958 970 1010">채란기 1대</td> <td data-bbox="970 958 1329 1010">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td> </tr> <tr> <td data-bbox="392 1010 517 1093">검사용</td> <td data-bbox="517 1010 970 1093">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td> <td data-bbox="970 1010 1329 1093"></td> </tr> <tr> <td data-bbox="392 1093 517 1137">소독용</td> <td data-bbox="517 1093 970 1137">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td> <td data-bbox="970 1093 1329 1137"></td> </tr> <tr> <td data-bbox="392 1137 517 1182">인쇄용</td> <td data-bbox="517 1137 970 1182">스트로 인쇄기 1대</td> <td data-bbox="970 1137 1329 1182"></td> </tr> <tr> <td data-bbox="392 1182 517 1227">봉합용</td> <td data-bbox="517 1182 970 1227">스트로 봉합기 1대</td> <td data-bbox="970 1182 1329 1227"></td> </tr> <tr> <td data-bbox="392 1227 517 1310">동결용</td> <td data-bbox="517 1227 970 1310">동결기 1대</td> <td data-bbox="970 1227 1329 1310">동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td> </tr> <tr> <td data-bbox="392 1310 517 1361">보관용</td> <td data-bbox="517 1310 970 1361">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td> <td data-bbox="970 1310 1329 1361"></td> </tr> </tbody> </table> <p>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p>	구 분	기계·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태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구 분	기계·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태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인력	<p>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기타	<p>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p> <p>나)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야 한다.</p>																												

4)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어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착유실 등 (젖소사육 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구비할 것 (3) 원유냉각기는 축사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축사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어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소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4)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산란계만 해당함)
소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함)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함)를 설치할 것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 비교

1. 번식우 :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경 산 우		초임우 (12개월령 이상 24개월령 미만)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 비교

1. 경산우 :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초임우 : 처음 임신한 소
5. 깔짚 방식 : 한우·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사육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트롤 방식
마리당 평균면적	12.8	8.6	9.0

※ 비교

1. 계류식 : 착유·건유 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틀 방식 : 착유 우사는 프리스틀,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구분	용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중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틀)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비교

1. 용돈 : 성숙한 수돼지(교배에 활용되는 수돼지)
2. 번식돈 :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돼지
5. 중부대기돈 :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돼지
6. 후보돈 :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돼지
7. 새끼돼지 :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 떼 돼지)
8. 육성돈 :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2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
9. 비육돈 :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 (2) 새끼돼지는 번식돈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젓을 떼지 않은 새끼돼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cage)	0.05m ² /마리	
	평사	0.11m ² /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m ²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2)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용 오리	0.246m ² /마리	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 비고

고상식 시설 :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
(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다.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2.20>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허가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1)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2) 가축사육업		경고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허가 취소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허가 취소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아.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허가 취소		

2.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1호	등록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4호	등록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5호	등록 취소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3.2.20>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 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 제6호	등록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7호	등록취소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200	300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	50	20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	50	2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	50	200
마.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10	100	200
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50	200	300
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50	200	300
아.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8호	100	2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6조 제1항제9호	50	100	300
차.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0호	20	50	100
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1호	50	100	300
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2호	100	200	300
파.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3호	100	250	500
하.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4호	10	50	200

측산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삭제 <2013.4.11>	163
[별표 2] 삭제 <2013.4.11>	163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63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65
[별표 3의3]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67
[별표 3의4]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의3제2항 관련)	171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제38조제4항 관련)	172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제44조 관련)	174
[별표 6]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177

[별표 1] 삭제 <2013.4.11>

[별표 2] 삭제 <2013.4.11>

[별표 3] <개정 2013.4.11>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인증기준																												
1. 종축	<p>가. 소</p> <p>1)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p> <p>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것</p> <p>가) 한우 :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퍼센트 이상이 후대검정성적(後代檢定成績)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킬로그램, 육질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p> <p>나) 젖소 :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의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퍼센트 이내, 캐나다 및 일본은 상위 5퍼센트 이내, 호주는 상위 2.5퍼센트 이내일 것</p> <p>나. 돼지</p> <p>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27 1467 1332 1769"> <thead> <tr> <th rowspan="2">품종</th> <th colspan="2">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th> <th rowspan="2">사료 요구율</th> <th rowspan="2">등지방 두께 (cm)</th> <th rowspan="2">생존 새끼 수 (마리)</th> </tr> <tr> <th>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th> <th>1일 체중 증가량(g)</th> </tr> <tr> <td></td> <td></td> <td>농장</td> <td>검정소</td> <td></td> <td></td> </tr> </thead> <tbody> <tr> <td>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td> <td>131 이하</td> <td>720 이상</td> <td rowspan="4">1,000 이상</td> <td rowspan="4">2.2 이하</td> <td rowspan="4">15 이하</td> </tr> <tr> <td>버크셔, 햄프셔</td> <td>145 이하</td> <td>640 이상</td> </tr> <tr> <td>번식용 씨돼지</td> <td>125 이하</td> <td>750 이상</td> </tr> <tr> <td>재래돼지</td> <td>210 이하</td> <td>320 이상</td> </tr> </tbody> </table> <p>※ 비고</p> <p>1. 1일 체중 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p>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131 이하	72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버크셔, 햄프셔	145 이하	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25 이하	750 이상	재래돼지	210 이하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131 이하	72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버크셔, 햄프셔	145 이하	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25 이하	750 이상																											
재래돼지	210 이하	320 이상																											

구분	인증기준																													
	<p>2. 생존새끼 수는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p> <p>3.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427 607 1337 952"> <thead> <tr> <th rowspan="2">분만 회차</th> <th colspan="2">보정계수</th> </tr> <tr> <th>랜드레이스</th> <th>요크셔</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08</td> <td>1.11</td> </tr> <tr> <td>2</td> <td>1.04</td> <td>1.04</td> </tr> <tr> <td>3</td> <td>1.01</td> <td>1.00</td> </tr> <tr> <td>4</td> <td>1.00</td> <td>1.00</td> </tr> <tr> <td>5</td> <td>1.01</td> <td>1.01</td> </tr> <tr> <td>6</td> <td>1.03</td> <td>1.02</td> </tr> <tr> <td>7</td> <td>1.06</td> <td>1.04</td> </tr> <tr> <td>8</td> <td>1.08</td> <td>1.06</td> </tr> </tbody> </table> <p>* 보정방법 :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p> <p>2) 돼지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DNA검사결과가 음성일 것(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p> <p>3) 보유 씨수돼지의 혈통, 이동 및 도태기록을 모두 유지할 것</p>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2. 위생·방역	<p>가. 소 : 브루셀라병·소렙토스피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증·캠필로박터감염증·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p> <p>나. 돼지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페렴, 돼지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홍막페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p>																													
3. 정액품질 관리 등	<p>가.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기록을 유지할 것</p> <p>나. 정액의 채취·제조·샘플검사 및 판매 기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p>																													
4. 인력·시설 및 장비	<p>가. 인력 :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p> <p>나. 시설</p> <p>1) 외부에서 들어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p> <p>2)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p> <p>다. 장비 :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p>																													
5. 그 밖의 사항	<p>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액등처리업의 위생 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별표 3의2] <신설 2010.10.1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종돈업체

가. 종돈

1) 원종돈(Gran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나. 위생·방역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독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페렴, 돼지썩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페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어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원종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의 경우 :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돈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종계업체

가. 종계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리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리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나. 위생·방역 : 추백리, 가금티푸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 만성 호흡기병 및 전염성 활막염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 종계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계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 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의3] <신설 2013.4.11>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총 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2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 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6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24	

비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 총 12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 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자율선택	4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12	

3.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총 8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 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 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 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8	

4.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등록자를 말한다)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 분노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계	6	

5.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2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계	6	

6.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 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계	6	

7.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 총 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계	4	

8. 기타

- 가.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나. 질병·사고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진단서 등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 다. 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2013년 2월 23일 전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기산점을 2013년 2월 23일로 본다.

[별표 3의4] <신설 2013.4.11>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40점), 교육인력(25점), 교육실적(15점), 교육실행 능력(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40)	교육장 시설 (40)	실습교육장 규모 및 보유 여부(3)	50명 이상 동시 교육(200m ² 이상) 실습이 가능한 시설 규모	자체보유(3) 임차보유(2) 없음(0)	
		실습장비(방역차량·소독기) 보유(5)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자체보유(5) 임차보유(3)	
		이론 교육장 시설규모(20)	강의가 가능한 시설(책상, 의자 등)을 갖춘 100명 이상(200m ² 이상), 50명 이상(100m ² 이상), 또는 30명 이상(80m ² 이상) 동시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200m ² 이상 강의실(20) 100m ² 이상 강의실(15) 80m ² 이상 강의실(10) 임차 강의실인 경우 해당면적 점수에서 100분의 20을 감함	
		교육장 접근성(10)	교육장 소재지 기준	시·군 관할(10) 미관할(5)	
		숙박시설(2)	학습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 시설 보유 여부	여유(2) 부족(1) 없음(0)	
		교육인력(25)	교육담당 인력 확보 수(25)	교육진행 및 전담 인력 확보 수	3인 이상 (25) 2인(20) 1인(15)
교육 역량 (60)	교육 실적 (15)	3년간 교육 횟수 (5)	3년간 전체 교육 횟수	10회 이상(5) 10회 미만(4) 5회 미만(3)	
		3년간 교육 인원(10)	전체 교육 이수자 수	500명 이상(10) 300명이상(5) 300명 미만(3)	
	교육실행 능력 (2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충분(10) 약간 부족(5)	
		운영조직의 체계성 (10)	조직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충분(10) 약간 부족(5)	

[별표 4] <개정 2013.4.11>

등급판정의 방법 · 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1. 소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소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소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B·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1·2·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1++B·1++C·1+A·1+B·1+C·1A·1B·1C·2A·2B·2C·3A·3B·3C·등외등급

2. 돼지 도체

가. 냉도체 판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 (이하 “돼지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1) 규격등급: 도체의 중량, 등 부위 지방두께,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및 결함 상태 등을 고려하여 A·B·C등급으로 판정한다.

2) 육질등급: 규격등급 판정결과와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및 지방의 색깔·조직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4) 등급의 종류: 1+A·1A·1B·2A·2B·2C·등외등급

나. 온도체 판정방법: 도축하여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가목 1)부터 4)까지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3. 닭·오리 도체

도축한 후 도체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중량 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 도체의 비육 상태 및 지방의 부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 100그램 단위로 구분한다.

4. 닭 부분육 : 도축한 후 부분육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부위별로 선별하여 부위별 품질수준,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5. 계란

세척 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의 크기, 난백 및 난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3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구분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개정 2013.4.11>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의 도체 또는 닭·계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 등록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 1) 소 도체 :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2) 돼지 도체 :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규격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3)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닭·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2. 표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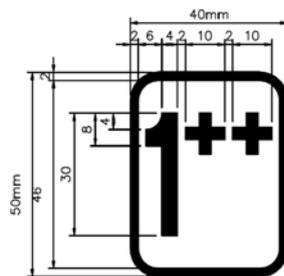
가. 소 도체: 좌·우 반도체의 설도(泄道)부위와 등심부위에 표시하되,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돼지 도체: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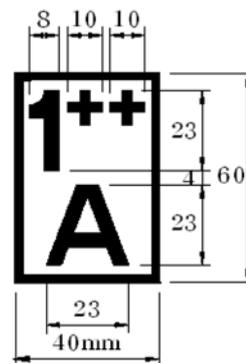
다.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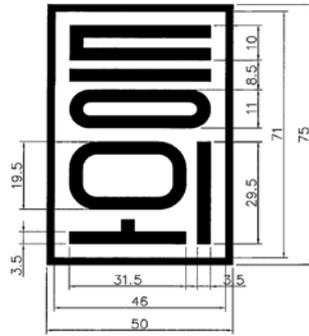
가. 소 도체



1⁺⁺ : 육질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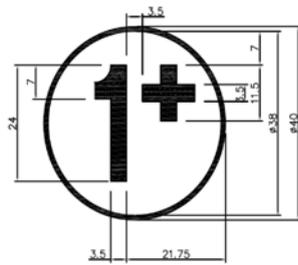


1⁺⁺ : 육질등급, A : 육량등급
(육량등급 표시를 원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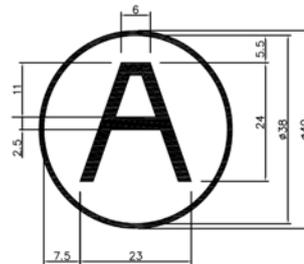


등외 : 등외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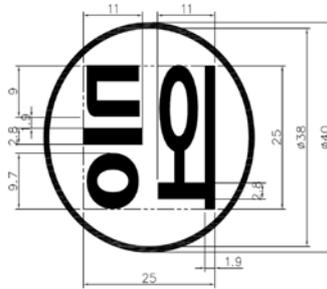
나. 돼지 도체



1+ : 육질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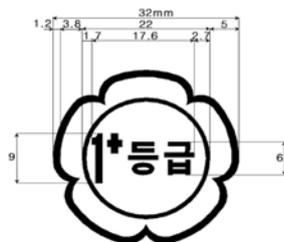


A : 규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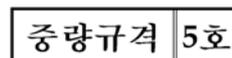


등외 : 등외등급

다. 닭·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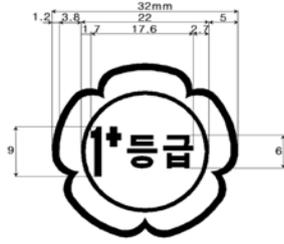


1+ : 품질등급



5호 : 중량규격

라.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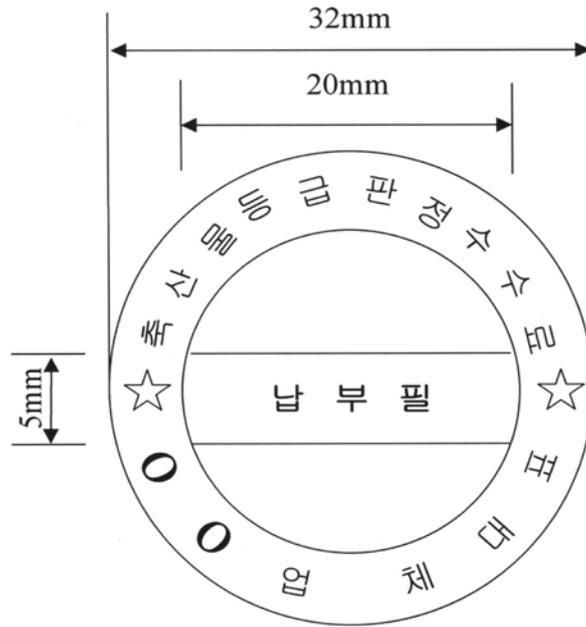
1+ : 품질등급

중량규격	대
------	---

대 : 중량규격

[별표 6]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181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182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183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84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185
[별지 제6호서식] 합격증	18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4.11>	18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4.11>	186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87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189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수정증명(기술자 보관용)	190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증명(기술자 보관용)	192
[별지 제13호서식]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194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우수 종축업체] 인증신청서	195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우수 종축업체] 인증서	196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변경 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서	197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변경 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서	199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 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서	200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허가·변경 허가] 신청서	201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3.4.11>	202
[별지 제21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203
[별지 제22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205
[별지 제23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207
[별지 제24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209
[별지 제25호서식]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관리카드	211
[별지 제26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	213
[별지 제27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	214
[별지 제28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	215
[별지 제29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	216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217
[별지 제2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증	219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21
[별지 제30호서식] 축산업허가·가축사육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222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23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224
[별지 제33호서식] 종란 혈통보증서	225
[별지 제34호서식]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	226
[별지 제35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227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228
[별지 제35호의3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230
[별지 제35호의4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	232
[별지 제35호의5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33
[별지 제35호의6서식] 가축거래상인(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234
[별지 제35호의7서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235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소·돼지) 등급판정신청서	236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238
[별지 제37호의2서식] 축산물(닭·오리) 등급판정신청서	240
[별지 제38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242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244
[별지 제40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245
[별지 제41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246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247
[별지 제43호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248
[별지 제44호서식]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249
[별지 제45호서식]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250
[별지 제45호의2서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 신청서	251
[별지 제4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	253
[별지 제4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254
[별지 제48호서식] ()년도분 축산발전기금 용자실적보고	255
[별지 제49호서식] ()년도분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256
[별지 제5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257
[별지 제51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258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_____)	
자격증	종류	번호
	발행처	발행일자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 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	--	-------------------------

유의사항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정신질환자
 - ③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위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면허증번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_____)	
신청내용	면허증 발급 연월일	
	사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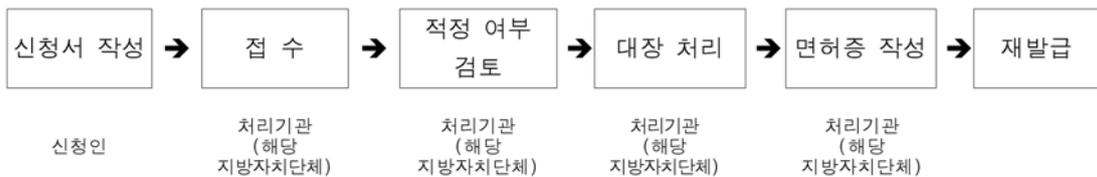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수수료 6,000원
-------------	--	---------------

유의 사항

해당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합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 시행한 제 회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4.1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4.1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4.11>

개설 휴업 폐업
가축인공수정소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제출 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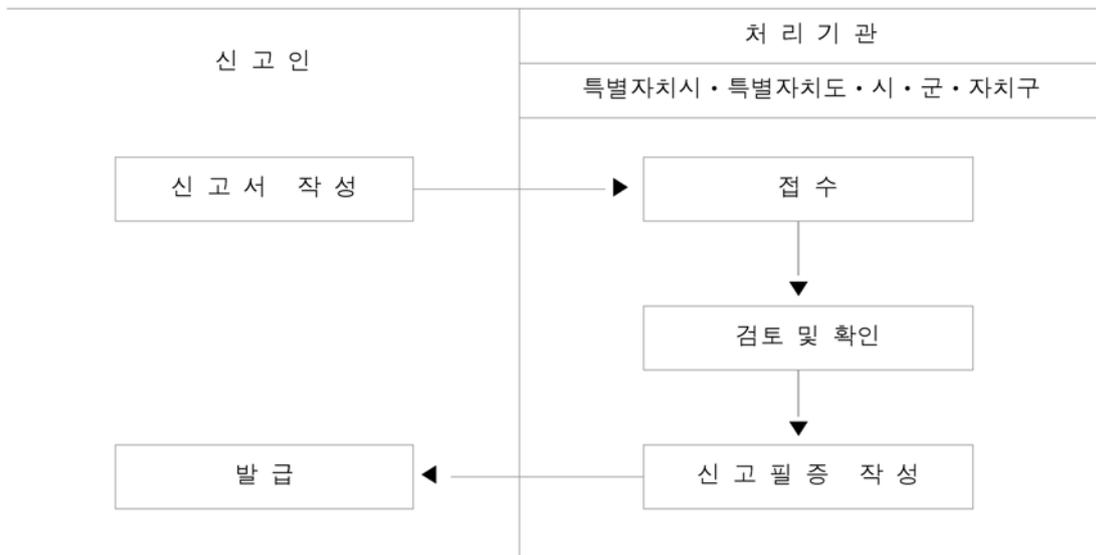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유의사항

-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명 칭 :

소재지 :

「축산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정액번호	수정일자 년 월 일
	종모축 이름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수정사

..... 자 르 는 선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정액(난자)증명]

발급번호					
정액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공급수량	
종모축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 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정액(난자)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 공급수량란에는 종축 한 마리에서 생산된 정액이 동시에 한 농장에 공급되는 경우 그 수량을 표시합니다
[비육돈(肥育豚) 생산용 정액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정증명)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수정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재발정 예정일
		분만 예정일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인)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이용방법 : 앞쪽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아래 사항 중 해당 축종에 대한 자료를 넣어 인쇄할 것

<젖소>

종모우 유전능력 참고자료					
정액번호:	등록번호:	성적기준:	년	월	
총생산지수():					
생산유전능력:	유량():	kg	지방량():	kg	단백질량():
	신뢰도():				kg
외모유전능력:	외모():	유방():	지제():	신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수 외모형질 • 주의할 외모형질 					

비고 : 생산능력의 표시단위는 kg임. 다만, 캐나다산은 BCA지수임.

<한우>

종모우 육종가 및 후대검정 성적내역							
정액번호:	등록번호:	성적기준:	년	월			
형질	검정 두수	일당증체량	도체율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후대검정성적	두	g	%	cm ²	mm		
형질	일당증체량	종료체중 (22개월령)	등지방 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근내 지방도	신뢰도	
육종가	g	Kg	mm	cm ²			

비고 : 본 정액에서 태어난 자손에서 흑비, 이모색 등이 발현될 수 있음

<종돈>

종돈 유전능력 참고자료			
검정기관(농장)명 :			
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kg시 일령	90kg시 일령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일	일	g	
등지방 두께	배최장근단면적	정육율	선발지수
mm	cm ²		

(주) 서식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뒤쪽을 별도로 인쇄하지 아니하고 해당 축종자료를 앞쪽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넣어 인쇄하되, 앞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앞쪽) 표시는 삭제하고 인쇄할 것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수정란 부 모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시술자 소속 시술자

..... 자 르 는 선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수정란증명)

발급번호		
수정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용도구분 []자가, []학술
종모우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통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란우 이름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통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	--------	-----

(수정란이식증명)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시술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인)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용방법 : 앞쪽 종모측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아래 사항 중 해당 측종에 대한 자료를 넣어 인쇄할 것[(주) 1.의 내용을 함께 인쇄할 것]

<젓소>

유전능력 참고자료				
수정란 예상유전능력	유량 외모	유지량 신뢰도	유지율	신뢰도
수정란 종모우 예상유전능력	유량 외모	유지량 신뢰도	유지율	신뢰도
수정란 공란우 예상유전능력	유량 외모	유지량 신뢰도	유지율	신뢰도

<한우>

종모우 육종가 및 후대검정 성적내역				
수정란 예상유전능력	일당증체량	배최장근단면적	근내 지방도	도체율
	등지방 두께	신뢰도	외모점수	신뢰도
수정란 종모예상유전능력	일당증체량	배최장근단면적	근내 지방도	도체율
	등지방 두께	신뢰도	외모점수	신뢰도
수정란 공란우 예상유전능력	일당증체량	배최장근단면적	근내 지방도	도체율
	등지방 두께	신뢰도	외모점수	신뢰도

- (주) 1. 이 증명서는 태어나는 송아지의 혈통을 등록하거나 송아지가 자란 후 수정 시 근친번식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기록된 증명서이니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서식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뒤쪽을 별도로 인쇄하지 아니하고 해당 측정자료를 앞쪽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넣어 인쇄하되, 앞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앞쪽) 표시는 삭제하고 인쇄하여야 합니다.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1. 성 명:

2. 소 속:

3.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위 사람은 「축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 검사공무원(검사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4.11>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신청서**
 우수 종축업체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사업장	상 호 명 소 재 지	
취급 품목(종축)		

「축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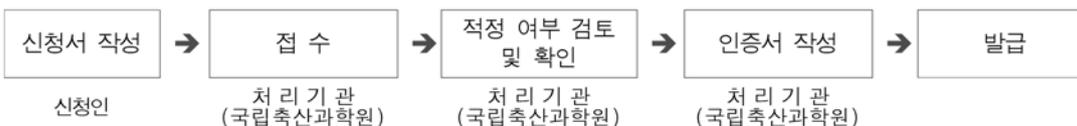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종축업 허가증 사본 1부.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1부 (젖소만 해당합니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관할 시·도가축 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취급 품목(종축)란에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적고, 종축업체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종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4.1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호		
우수업체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우수 종축업체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취급품목(종축) :		
「축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업체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4.11>

종축업

[] 허가 [] 변경 허가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

신청인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고 유 번 호

사업 장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명 칭	⑦ 가 축 종 류		
	⑧ 종 축 종 류	암	수	계
	⑨ 사 육 형 태	원종돈(GGP) · 원종계(GPS)	종돈(GP) · 종계(PS)	
	⑩ 가 축 사 육 면 적	동	m ²	
	⑪ 그 밖 의 시 설	동	m ²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 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m²(재활용품)]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새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6.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4.11>

부화업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 명 ③ 주 소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고 유 번 호	
사업장	⑤ 명 칭 (전화번호 :) ⑥ 소 재 지		

-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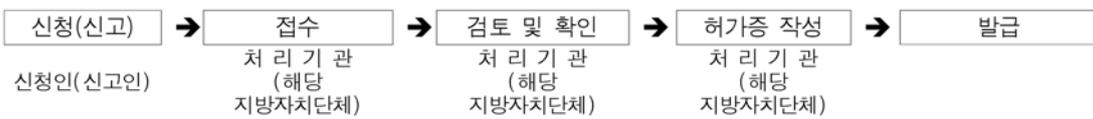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4.11>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	------------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채취·검사·봉합·동결·인쇄·보관·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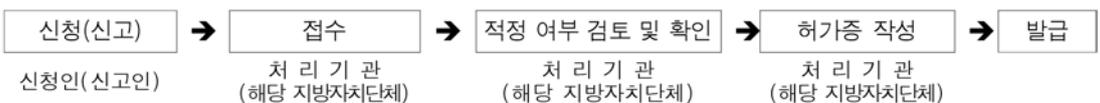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사육업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구분	동수(동)	면적(m ²)	⑧ 비고
가축사육시설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²,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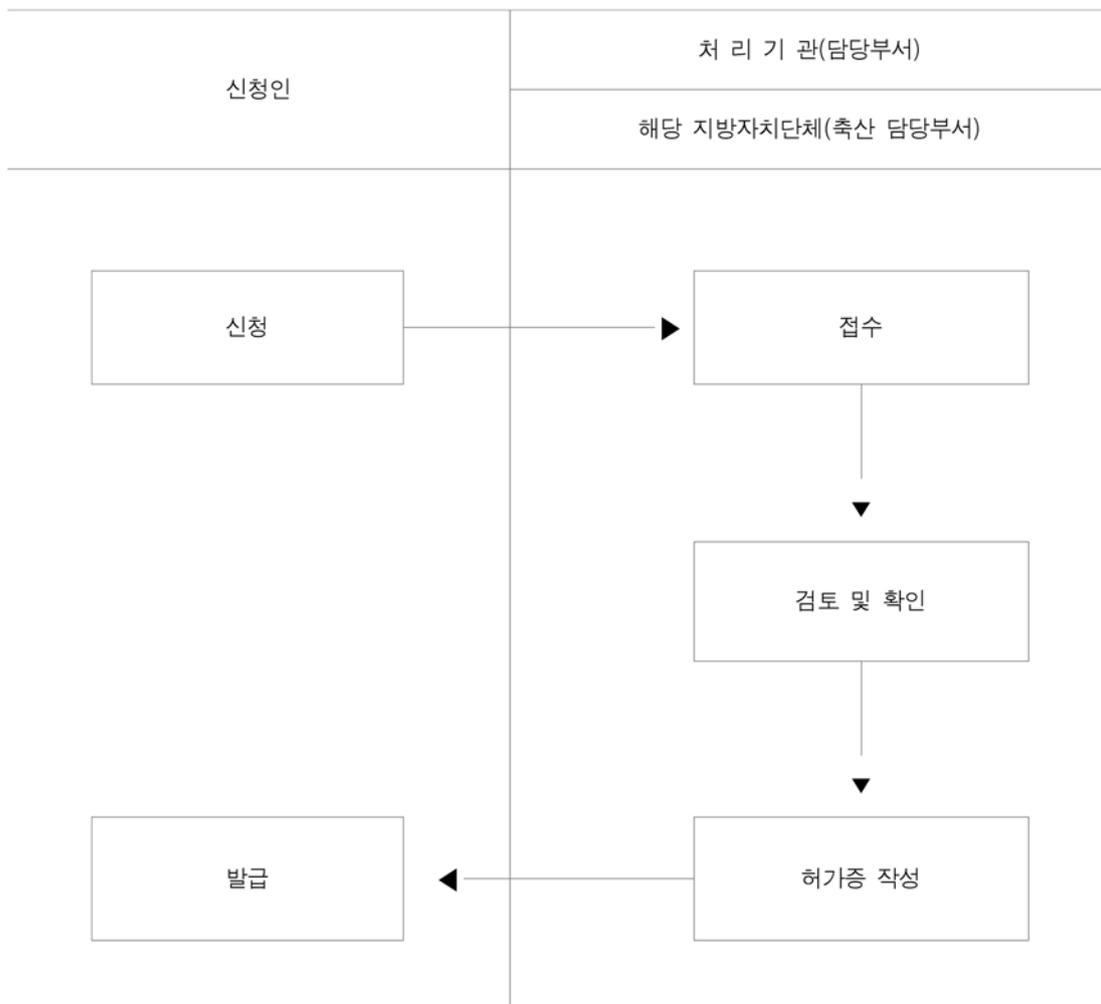
유의 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3.4.11>

제 호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고유번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 규모: 동 m²

「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축업의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직인

(뒤쪽)

변경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제 호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고유번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부화대상가축:

1회 입란능력:

「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화업의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직인

제 호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명 :

사업장의 소재지 :

취급품목 :

「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자치구청장

직인

제 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고유번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 규모: 동 m²

부화용알 생산:(사육시설) 동 m²

「축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자치구청장

직인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관리카드

(앞쪽)

1. 등록내용

축산업의 종류		연락처
고유번호		
허가자· 등록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명칭	연락처
	소재지	

부화업	부화대상 가축				1회 입란능력	
종축업 (종축 두수)	종축종류		암		수	계
			두		두	두
종축업 및 가축사육 업	구분		동 수(개)	면 적(m ²)	비 고	
	가축 사육 시설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 타				
		계				
사육 마릿수 (가축사육업)						
부화용알생산		가축사육시설			수수	
		동	m ²		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2. 변경신고 등

구 분	신 고 인	신 고 내 용	비 고	기 재 자

3.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구 분	처 분 일 시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의 내용	이 행 여 부	기 재 자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

허가 연월일	허가 일련 번호	고유 번호	부화장 명칭	허가자 성명	부화대상 가축	1회 입란능력	비고
			부화장 소재지	주민(법인) 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

허가 일자	허가 번호	고유 번호	정액등처리업 명칭	허가자 성명	취급품목	비고
			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13.4.1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한우·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⑦	구분	동수(동)	면적(m ²)	⑧ 비고
가축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사육	기타			
시설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²,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 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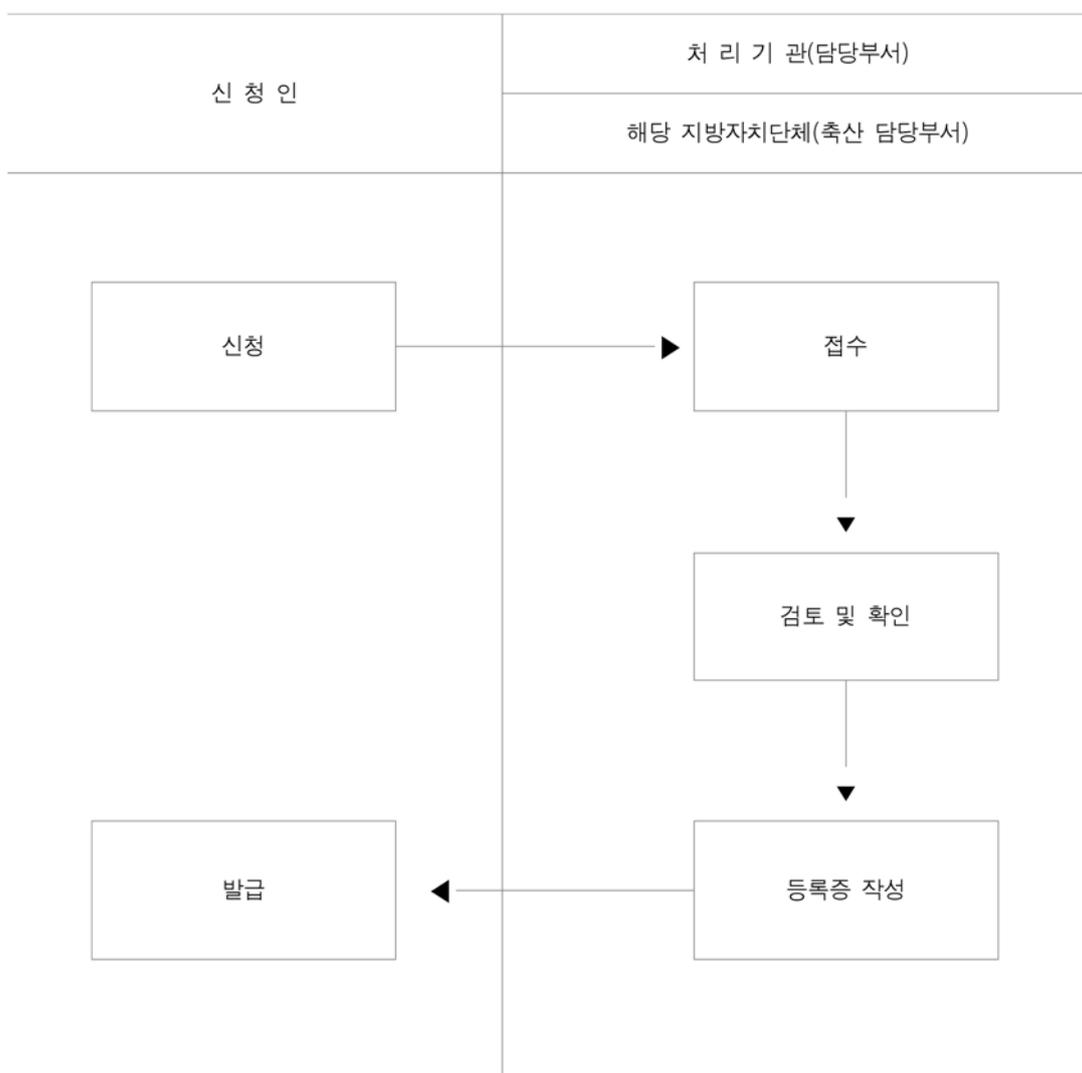
유의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가축사육업 등록증

고유번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 규모: 동 m²

부화용알 생산:(사육시설) 동 m²

「축산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자치구청장



(뒤쪽)

변 경 사 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13.4.11>

휴업 폐업 영업재개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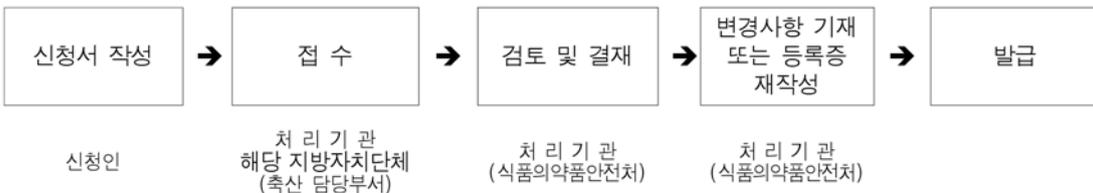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축산업허가·가축사육업등록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신고 일자	신고 번호	허가번호 (등록번호)	허가자(등록자) 성명	사업장 명칭	신고내용	비고
		고유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4.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법인합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축산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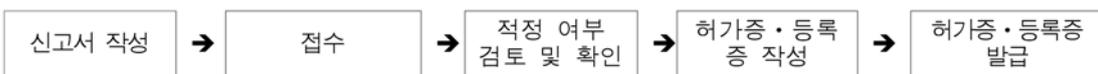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 리 기 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4.11>

제 호				
종란 혈통보증서				
품 명				
용도 및 세대				
수 량	용도		세대	
생 산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명 칭			
	소재지			
공급 부화업체	명 칭			
	소재지			
<p>「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란혈통을 보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증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제 호 병아리 · 새끼오리 계통보증서		
계 통 명		
용도 및 세대		
성 별 및 수 량		
부 화 일 자		
부화 장소	명 칭	
	소재지	
종란채취 장소	명 칭	
	소재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아리 · 새끼오리 계통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앞쪽)

제 호

축산업검사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업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부터까지

위의 사람은 「축산법」 제28조·제34조
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축산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13.4.11>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등록사항 변경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⑤ 고유번호		
	⑥ 거래가축의 종류		
	⑦ 가축 거래지역		
	⑧ 가축운반 차량번호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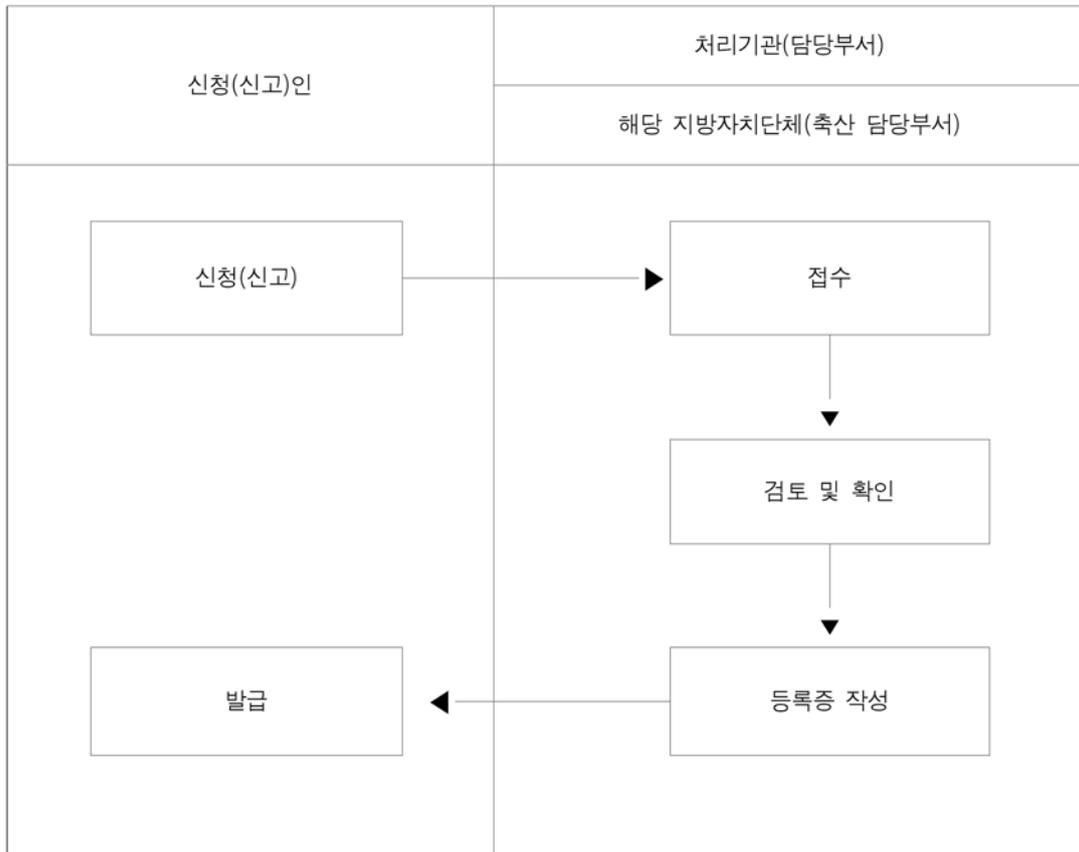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군·구까지 적습니다.
3. ⑧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고 유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거 래 축 종:

가축운반차량 번호: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자치구청장

직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6서식] <신설 2013.4.11>

가축거래상인(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신고 일자	신고 번호	등록번호	등록자 성명	신고 내용	비고
		고유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7서식] <신설 2013.4.11>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거래 일자 (연월일)	일련 번호	거래 가축의 종류	거래 마릿 수	구매 또는 의뢰처		판매 또는 거래처		비 고
				농장주명	소재지	상호	소재지	

※ 구입 또는 의뢰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은 곳을 적고, 판매 또는 거래처는 구입 또는 의뢰처로부터 구매 또는 위탁받은 가축을 알선·판매 또는 양도한 곳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 ([] 소 [] 돼지)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업태유형
	⑤주소 (전화번호:)	

도축장	⑥업체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⑨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⑩성명	⑪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⑫농장명	⑬고유번호
	⑭주소 (전화번호 :)	

⑮ 접수번호	⑯개체 식별 번호	⑰가축의 종류	⑱ 품종	⑲ 성별	⑳생체량 (총 마릿수)	㉑연령 (월령)	㉒등급 판정 제외부위	㉓돼지 등급 판정방법	㉔육량(규격) 등급 표시 여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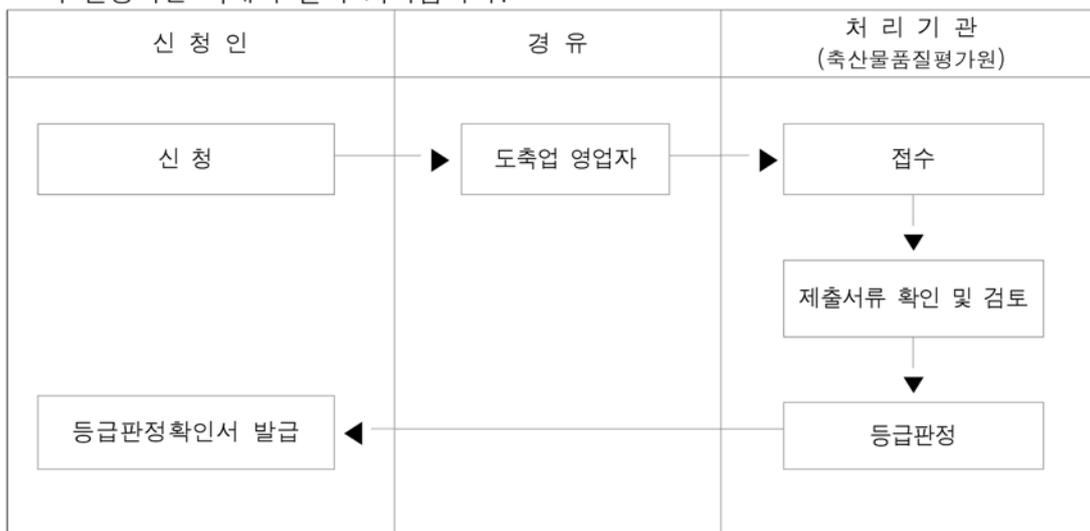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유의사항

1. ① ~ ⑤란 및 ⑩ ~ ⑭란은 신청인이, ⑥ ~ ⑨란 및 ⑮ ~ ㉑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㉒ ~ ㉔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도축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④란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 가. '업태유형'은 조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육가공업, 기타로 구분
나. '조합'은 농협·축협 등 조합을 말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으로 분류
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을 말함
라. 축산물판매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및 '정육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마. 기타는 자가도축을 말하거나 위 사항 외의 업태유형을 말함
3. ⑩ ~ ⑫란 및 ⑭란은 가족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실제 사육자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4. ⑬란은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신청인이 적습니다.
5. ⑮란의 접수번호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체의 구분을 위하여 도체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6. 돼지의 경우에는 ⑯·⑰·⑱ 및 ㉑란은 적지 않습니다.
7. ⑲ ~ ㉑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습니다.
 - 가. ⑲란: 소·돼지
 - 나. ⑳란: 한우·젓소·육우·수입소(수출국명)
 - 다. ㉑란: 암·수·거세
 - 라. ㉒란: 소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킬로그램)을,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 두수
8. ㉓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예)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
9. ㉔란은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을 적습니다.
 - (예) 온도체 또는 냉도체로 표시
10. ㉕란은 육량등급 또는 규격등급 표시 여부를 적습니다.
 - (예) 표시를 희망할 경우 "O" 표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축산물가공 영업소 ·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고유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품종	⑯일령	⑰산란일	⑱수량	⑲중량규격	⑳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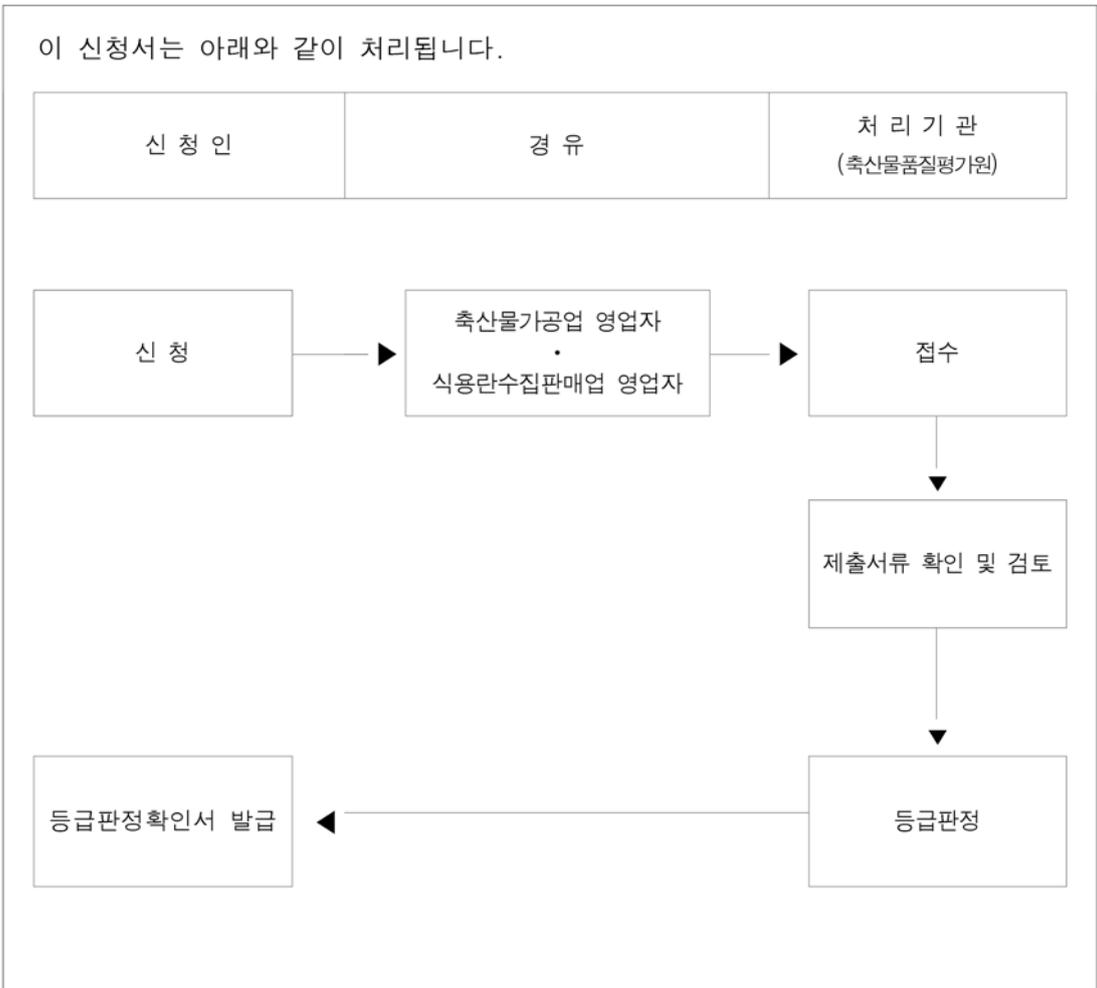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⑳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용란수집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고, ⑫란은 축산관련 법령 등 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3.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자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
4. ⑯~⑰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13.4.11>

축산물 ([] 닭 [] 오리)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도축장 · 식육포장 처리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고유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품목(부위)	⑯품종	⑰수량	⑱중량규격	⑲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⑲란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⑱란 및 ⑲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여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⑳란은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㉑란은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오리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㉒란은 "닭도체", "부분육(부위명)", "오리도체"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㉓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㉔란은 "닭도체"와 "오리도체"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도축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가축의 종류	성별	개체식별번호	
도체번호	총 마릿수		
제외사유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제출서류	연구계획서 1부(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 자 르 는 선

발급번호 :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도축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가축의 종류	성별	개체식별번호	
도체번호	총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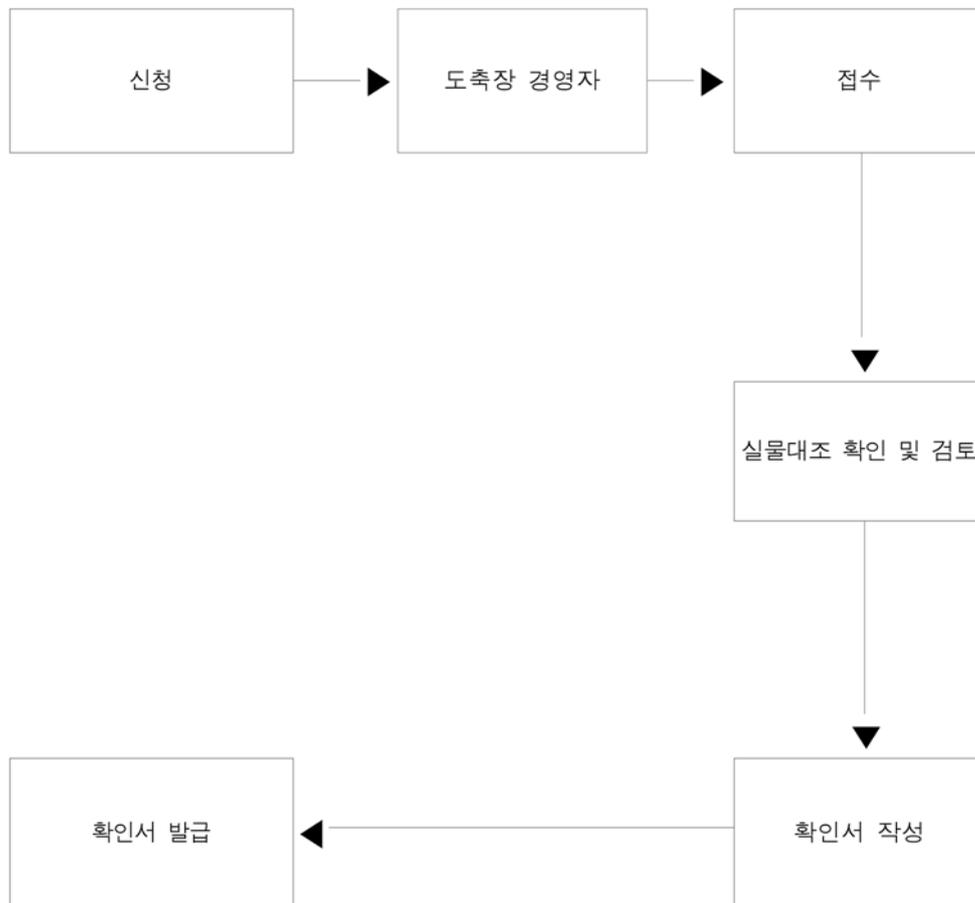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앞쪽)

제 호

축산물품질평가사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홍길동

54.0mm × 85.6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품질평가사증

성 명 :

생년월일 :

품질평가사 번호 :

위 사람은 「축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임을 증명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발급 연월일	품질 평가사 번호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재발급 사유	회수 여부	결재란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4.11>

(앞쪽)

제 호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 _____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의 사람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질문 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4.11>

등급판정 상황						
구 분	소			돼지		
	도축두수	등급판정		도축두수	등급판정	
		신청두수	제외두수		신청두수	제외두수
당 일	두			두		
월간누계						
<p>「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 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도축장 대표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p>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발급번호: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개체식별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육질	육량(육량지수)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발급번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단위: 두)

도체번호	두수	등급		도체번호	두수	등급		도체번호	두수	등급	
		육질	규격			육질	규격			육질	규격

전체: 두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발급번호: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축산가공· 포장처리업소·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품목(부위)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납품내역	납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또는 중량(kg)	
  				

발급 횟수 :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재발급 [] 추가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⑤주소 (전화번호 :)			
⑤업체명(도축장 등)				
⑥발급번호		⑦발급일자		⑧등급판정일자
신청내역				
⑨납품처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부위명	⑫중량(kg)	⑬ (재발급·추가발급) 신청사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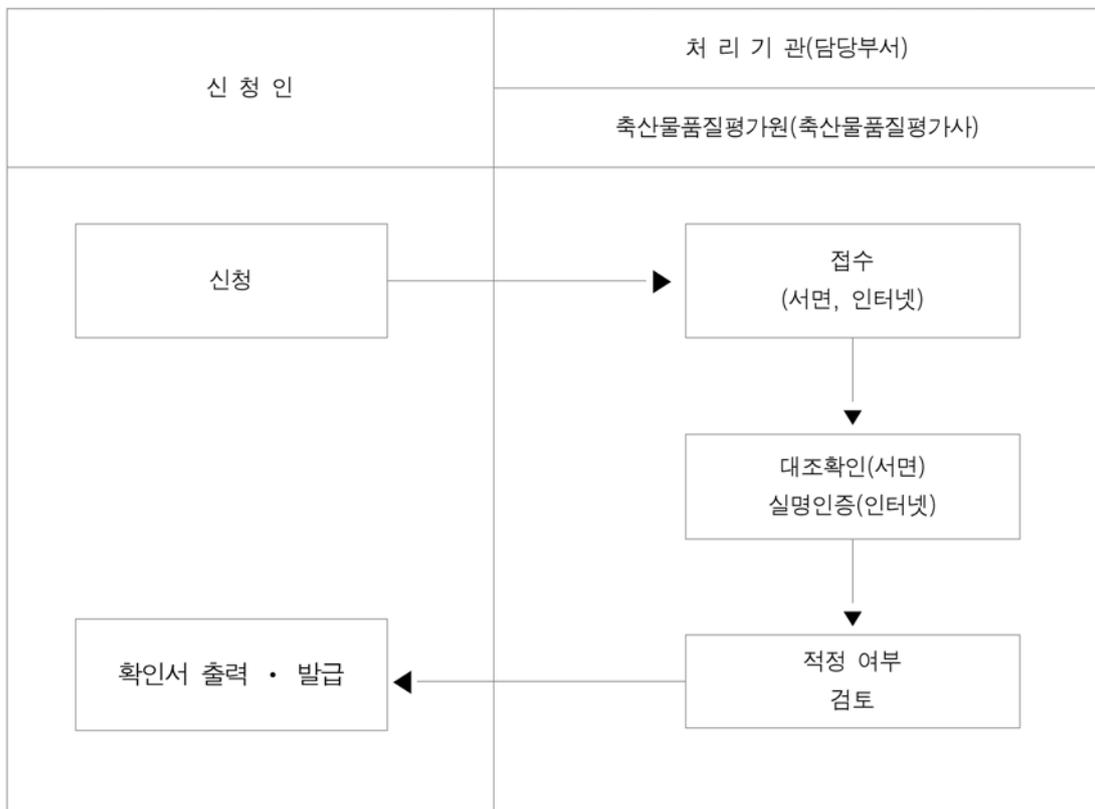
제출서류	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등급판정확인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이미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와 잃어버린 경우 ⑨ ~ ⑫란은 생략합니다.
3. ⑪란은 대분할 부위명을 기재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분할 명칭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사유는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추가로 필요한 경우(납품: 학교급식, 음식 점, 자체매장, 유통업체, 군납 등)"로 구분하여 기재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

1. 관련근거 : 「축산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2.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3. 검사내용 및 조치사항

도축장명	위반사항	조치사항

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앞쪽)

제 호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축산법」 제42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축산법」 제42조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
하여 축산물등급판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4.11>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연 월	일련번호	고지번호	발급일자	고지한 수수료 금액	납입일자	납입자 (도축장)	수납기관 (금융기관)	납입금액	확인자 ^인	조치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